####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03

발의연월일: 2025. 4. 21.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서천호

최은석 · 강승규 · 김용태

김상훈 • 박준태 • 서명옥

이달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 등에서는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 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검찰청법」의 개정)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중 "심신장애로"를 "사고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중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2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심신장애로"를 "사고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중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한다.

- 제3조(「공증인법」의 개정)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4조(「변호사법」의 개정)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94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5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6조(「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7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변 행 개 정 안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39조의2(사고 등으로 인한 퇴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 직) -----사고 또는 회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있는 경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u>심신장애로</u> 인한 퇴직) 수	제15조( <u>사고 등으로</u> 인한 퇴직) -
사처검사가 중대한 <u>심신상의</u>	사고 또는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
<u>수 없을 때</u> 대통령은 처장의	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u>이 있는 경우</u>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징계위원회) ① ~ ⑥ (생	제85조(징계위원회) ① ~ ⑥ (현
략)	행과 같음)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제1호	7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	
명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	제8조(등록거부) ①
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	
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	
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	
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
곤란한 자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6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屬)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3. (생략
-------------

⑦ (생략)

 _
 _
 _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우

2. · 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u>인정될 때</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등록거부 등) ① 대한변	제12조(등록거부 등) ①
호사협회는 제10조제1항에 따	
른 등록신청이나 제11조제3항	
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	
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	
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	
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u>.</u>
1. 심신장애(心神障碍)로 인하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u>경우</u>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등록취소) ① (생 략)	제13조(등록취소) ① (현행과 같
	<u>수</u>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	②

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외국법자 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 3. (생략)

③ ~ ⑤ (생 략)

 _
 _
 _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우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	제39조(위원의 해촉)
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u>정될 때</u>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